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11
----------	-------

발의연월일 : 2018. 4. 17.

발의자 : 조배숙 · 김경진 · 김광수

손금주 · 심상정 · 유성엽

이동섭 · 이찬열 · 장병완

천정배 · 최도자 · 황주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적 약자는 고비용이 수반되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심판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또한, 경제적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고자 함(안 제125조의2제3항 신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③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심판 당사자가 해당 심판사건에 대해 밟는 절차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25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 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p> <p>③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심판 당사자가 해당 심판사건에 대해 밟는 절차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④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